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88
----------	-------

발의연월일 : 2026. 7. 21.

발 의 자 : 조계원 · 최혁진 · 윤준병
임오경 · 이정문 · 김 현
김우영 · 이성윤 · 정진욱
한준호 · 복기왕 · 이주희
허성무 · 김문수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 제정되어 1995년 전부개정된 이래, 급변하는 문화예술 정책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개정만을 반복해 왔음. 이로 인해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해진 수요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최근 K컬처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예술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그 위상을 높이고 있는바, 이러한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문화예술진흥법」의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진흥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최근 기초예술 분야의 산업적 움직임을 반영하여 ‘예

술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예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업·용자·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공모방식으로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확대하고, 공모제도를 개선하는 등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예술산업”이란 문학, 미술, 음악(「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적용대상이 되는 음악은 제외한다),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 등과 그로부터 파생된 예술상품을 창작·제작·기획·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시설의 운영,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 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문화예술의 진흥

제5조(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문화예술 분야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문화예술 창작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예술영재의 발굴·육성 및 청년예술인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의 향유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유통 및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8. 문화예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9. 문화예술 관련 학술·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제1

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의 창작 및 유통 환경,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예술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창작 관련 조사·연구·비평 지원
2.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
3.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공간을 직접 제공하거나, 제4항에 따라 창작공간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유지보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창작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창작공간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국고보조 비율의 차등 적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등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예술영재의 발굴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분야의 영재(「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재를 말한다. 이하 “예술영재”라 한다)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술영재의 조기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예술영재 지원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등 예술영재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청년예술인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작활동 및 창작공간 지원
2. 문화예술 관련 기관 인턴십
3.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참가 지원

4. 문화예술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5. 청년예술인의 인적 교류 및 협업
6. 그 밖에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문화예술의 국제교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2. 문화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3. 문화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 문화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관련 자료의 출판·번역 및 배급
5. 문화예술 관련 국제행사 개최·지원 및 참가
6.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학술활동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문화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제13조(문화시설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

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거점 문화시설의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연장, 미술관 등 지역 거점 문화시설의 건립(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운영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거점 문화시설 확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역 거점 문화시설 확충 계획의 수립, 지원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장애예술인 공연·전시의 정기적 실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연·전시 등의 실시 주기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 ① 문화시설에 이루어지는 공연·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관련 활동이나 행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행사”라 한다)를 주관·주최하거나 운영하는 단체·법인·개인 및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는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3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및 설치하여야 하는 미술작품의 종류,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①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가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추천하는 위원을 전체 정수(定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미술작품의 관리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의 소유자(이하 “미술작품 소유자”라 한다)는 해당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미술작품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미술작품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 원상회복 조치. 다만, 미술작품 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술작품의 위치, 형태, 노후화 등의 사유로 보수 또는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수 또는 철거 조치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실태의 점검,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미술작품의 공모 등) ① 건축주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

③ 건축주는 시·도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이하 “공모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업무를 대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를 통해 미술작품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모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공모대행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모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모대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시·도 공모대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공모대행기관을 통한 공모절차 및 방법, 공모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작품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시스템(이하 “미술작품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미술작품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문화예술 향유와 복지증진

제23조(장려금 지급 등) ①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

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없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제24조(문화강좌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청소년단체 및 직장의 학생·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청소년

단체 및 직장에 학생·청소년·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 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역 간 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예술산업의 진흥

제30조(예술산업의 육성·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예술산업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예술산업 현황 분석 및 평가
2. 예술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그 밖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을 계약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예술산업 관련 표준계약서를 고시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제3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3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문화예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창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산업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창업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4.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교육 및 창업정보 제공
5.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6. 그 밖에 예술산업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4조(금융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57조에 따른 한국예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제3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

흥기금에서 융자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기술개발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산업과 관련된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산업과 관련된 인공지능 등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예술산업 관련 인공지능기술 동향·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2. 예술산업 관련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3. 예술산업 관련 인공지능기술 확산, 인공지능기술 협력·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4. 예술산업 관련 인공지능기술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5. 그 밖에 예술산업 관련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연구·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산업과 관련된 인공지능기술 등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36조(기금의 설치 등)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40조에 따른 한국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제38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용자의 상환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40조에 따른 한국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제40조에 따른 한국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7.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8. 제18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
9. 제34조에 따른 예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의 융자
10. 제40조에 따른 한국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11.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12.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3.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제39조(회계처리의 구분) 제38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융자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한국예술위원회 등

제40조(한국예술위원회)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설립등기 등) ① 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위원회의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
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
는 15명 이내(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에
는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
및 지역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구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4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
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결원되면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46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 금지) ① 위원장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4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48조(관여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

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4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0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제5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제52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위한 회의는 공개하면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의결한 경우만을 말한다)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5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3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과 해임을 한다.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4조(감사) ① 위원회의 직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제55조(성과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38조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성과 측정·평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⑤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협의체의 구성) 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

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한국예술산업진흥원) ① 예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예술산업 유통,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2. 예술산업 관련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3. 예술산업 창업지원, 금융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4. 예술산업 관련 조사·통계·연구
5. 예술산업 진흥을 위한 문화시설의 운영
6. 그 밖에 예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국가는 진흥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

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예술의 전당) ①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의 전당을 둔다.

② 예술의 전당은 법인으로 한다.

③ 예술의 전당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가는 예술의 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예술의 전당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⑤ 예술의 전당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연합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 지원
2. 문화예술회관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 문화예술회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4.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지원
5. 문화예술회관 관련 국내외 교류
6.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연합회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익은 제5항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60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위원회, 진흥원, 연합회가 아닌 자는 한국예술위원회,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이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장 보칙

제61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62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진흥원, 예술의 전당, 연합회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63조(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성과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와 지원을 받지 않는 자(지원신청을 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의 자의 가족관계·주민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소득·재산·출입국·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보 등을 분석하여 지원 여부에 따른 집단간 비교분석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가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64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진흥원, 그 밖의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5조(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진흥원, 예술의 전당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7조(과태료) ① 제6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술작품의 공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예술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한국예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한국예술산업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진흥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명칭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명칭으로 본다.

⑦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 당시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대표, 이사 및 감사는 각각 진흥원의 원장, 이사 및 감사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⑧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 당시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⑨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5조(예술의 전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에 따른 예술의 전당은 이 법에 따른 예술의 전당으로 본다.

제6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 본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를 “「문화예술진

흥법」 제18조”로 한다.

②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 위원회로 하여금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기금을”을 “「문화 예술진흥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예술위원회로 하여금 같은 법 제 3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하고, 제10조의3제2항의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로 한 다.

③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5제6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 용권”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에 따른 문화이용권”으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3제1항제3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를 “「문화예술 진흥법」 제18조”로 한다.

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2)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9호 및 제10호” 를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제12호 및 제13호”로 한다.

⑥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 기금”을 “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

로 한다.

⑦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로 한다.

⑧ 미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로 한다.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로 한다.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5항제2호라목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9호 및 제10호”를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제39조의13제4항제4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로 한다.

⑪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9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로 한다.

⑫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로 한다.

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로 한다.

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7조의2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제257조의3제2항제5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로 한다.

⑮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1항”으로 한다.